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128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김도연, 김남훈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정호성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53752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A은행의 C에 대한 채권

1) A은행은 2010. 2.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D 제49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C은 같은 날 G, H(이하 C, G, H를 'C 등'이라 한다)와 함께 D의 A은행에 대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A은행과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39억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D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A은행은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3852호로 D와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3. 위 법원으로부터 "D와 C 등은 연대하여 A은행에게 3,248,424,658원 및 그중 30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C 등은 3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H에 대한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0.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D는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9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1. 8.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위 회생절차는 2014. 6. 3. 종결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송금 내역

별지1 증여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I은행 계좌’라 한다) 및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J조합 계좌’라 한다) 등에서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F은행 계좌’라 한다)로 2015. 4. 28.부터 2018. 2. 20.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2,870,000,000원이 송금되었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위 각 송금행위로 송금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7, 11, 16,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송금액 상당액인 2,87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년 무렵부터 C에 대한 수차례의 재산조사를 통하여 C의 채무초과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2018. 4. 24.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5. 14.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C 명의의 계좌를 조회하여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이체내역을 확인함으로써 또는 2018. 5. 14. F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전달받음으로써 원고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이체사실 및 C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피고가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또는 C의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자금을 차용하거나 C이 이용하는 신용카드회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C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금융기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전제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은행 및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은행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8. 26. 확정되었고, A은행이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2012년 무렵부터 6차례에 걸쳐 C에 대하여 ‘일반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발견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마친 사실, ② 원고 소속 재산조사부는 2018. 3. 4. 무렵 ‘2018년도 국내재산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채무원금 1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K은행 부실채무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특별재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8. 4. 24. F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부실채무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2013. 4. 1.부터 2018. 4. 24.까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을 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18. 5. 14. F은행으로부터 C의 이해관계인인 피고 명의 이 사건 F은행 계좌에 대한 2013. 4. 4.부터 2018. 2. 22.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았는데, 위 금융거래내역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6. 5.로부터 1년 전에 C의 처분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C의 공동담보 부족, 나아가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송금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확인하였을 무렵에는,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C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즉 어떠한 법률행위에 기한 금전 이동인지까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12년 무렵부터 6차례에 걸쳐 C에 대하여 ‘일반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발견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마쳤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원고 소속 재산조사부는 2017년 말까지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31개 K은행 부실관련자 중 채무원금 30억 원 이상의 부실채무자에 대한 특별재산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8. 3. 8. ‘2018년 국내재산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채무원금 1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부실채무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특별재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위 특별재산조사는 ‘㉠ 채무원금이 일정액 이상인 부실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을 특별재산조사 대상자로 선정,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부실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의 명단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 자료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회신, ㉢ 회신 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검색프로그램(FTTP)1)에 입력하여 부실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간 자금흐름 등을 파악하여 ‘본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은닉정황이 있는 본조사 대상자를 선정, ㉣ 본조사 대상자에 대한 파산재단 현장조사 실시, ㉤ 파산재단 현장조사를 통해 자금흐름, 부동산 거래내역 등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확인, ㉥ 사해행위 의심행위 등을 파산재단에 통보하여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요청’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⑤ 원고 소속 재산조사부는 위와 같은 특별재산조사 절차에 따라 2018년 12월 무렵까지 채무원금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부실채무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채무원금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부실채무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마치지 못하였는바, C의 채무원금은 2018년 당시 10억 원 미만이어서 특별재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 후 원고 소속 재산조사부는 2019. 3. 4. F은행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F은행 계좌에 대한 2014. 1. 1. 이후의 세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J조합에 C 명의의 이 사건 J조합 계좌에 대한 2014. 1. 1. 이후의 세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주식회사 I에 C 명의의 이 사건 I은행 계좌에 대한 2014. 1. 1. 이후의 세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각 요구하였고, F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2019. 3. 15.’을 기준으로 C의 이해관계인인 피고에 대한 특별재산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9. 4. 25. 원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등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통보서(갑 제7호증)를 보냈다. 따라서 위 통보서에 첨부된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에서야 원고가 그 재산조사부 직원을 통하여 C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특별재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위 통보서가 작성된 시점 등을 고려하면, 2019. 4. 25.

이전으로서 이에 근접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그 시기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인 2018. 6. 5.보다 앞선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에 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 갑 제16, 18, 2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으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게 중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C이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4. 28. 11:40 무렵 L이 C 명의의 이 사건 I은행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1:43 무렵 C이 이 사건 I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F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별지1 증여계약 목록 순번 1 기재 송금행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대부분은 제3자가 C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C이 곧바로 또는 그 송금시간과 근접한 시간에 그 계좌에서 그 송금액과 동일·유사한 금액을 다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F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인바, 위와 같은 송금방식으로 금원을 증여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② 오히려 피고는 1997. 9. 1.부터 M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역시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③ 더욱이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이 사건 송금액은 합계 2,870,000,000원인데, C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면서 이용한 계좌 중 하나인 C 명의의 이 사건 J조합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5년 4월 무렵부터 2018년 2월 무렵까지 피고가 위 계좌로 송금한 금원도 합계 2,578,900,000원에 이른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지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웅환, 판사 정윤희, 판사 최현종

별지1

증여계약 목록

순번	계약일	증여액
1	2015/04/28	50,000,000
2	2015/05/07	70,000,000
3	2015/05/07	50,000,000
4	2015/06/26	20,000,000
5	2015/08/07	500,000,000
6	2015/08/20	33,000,000
7	2015/08/31	100,000,000
8	2015/12/10	14,000,000
9	2015/12/10	100,000,000
10	2015/12/10	1,500,000
11	2016/01/08	5,000,000
12	2016/02/16	7,000,000
13	2016/06/03	18,000,000
14	2016/08/10	6,000,000
15	2016/09/09	7,000,000
16	2016/11/02	9,000,000
17	2016/11/30	50,000,000
18	2016/12/01	15,000,000
19	2017/01/25	100,000,000
20	2017/02/15	100,000,000
21	2017/02/15	100,000,000
22	2017/02/15	100,000,000
23	2017/04/11	19,000,000
24	2017/04/14	100,000,000
25	2017/04/19	100,000,000
26	2017/04/19	60,000,000

27	2017/04/19	32,000,000
28	2017/04/25	50,000,000
29	2017/05/02	8,000,000
30	2017/05/08	52,000,000
31	2017/05/11	100,000,000
32	2017/05/24	24,000,000
33	2017/06/08	80,000,000
34	2017/06/12	50,000,000
35	2017/06/22	100,000,000
36	2017/06/22	100,000,000
37	2017/07/03	100,000,000
38	2017/07/13	50,000,000
39	2017/08/10	50,000,000
40	2017/09/06	85,000,000
41	2017/09/15	50,000,000
42	2017/10/13	75,000,000
43	2017/11/22	100,000,000
44	2018/02/20	29,500,000

합 계 2,870,000,000

끝.

별지2

목록

별지1 목록 순번	거래일시	거래계좌	송금인	송금액(원)
1	2015. 4. 28. 11:40	이 사건 I은행 계좌	L	50,000,000
	2015. 4. 28. 11:43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0
3	2015. 5. 7. 13:15	이 사건 I은행 계좌	L	50,000,000
	2015. 5. 7. 15:42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0
7	2015. 8. 31. 15:55	이 사건 I은행 계좌	N	50,000,000
	2015. 8. 31. 15:57	이 사건 I은행 계좌	O	50,000,000
	2015. 8. 31. 16:2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8	2015. 12. 10. 09:08	이 사건 J조합 계좌	P	9,000,000
	2015. 12. 10. 09:23	이 사건 J조합 계좌	P	5,000,000
	2015. 12. 10. 09:27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4,000,000
9, 10	2015. 12. 10. 09:35	이 사건 J조합 계좌	Q	1,500,000
	2015. 12. 10. 11:57	이 사건 J조합 계좌	R	100,000,000
	2015. 12. 10. 12:02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2015. 12. 10. 12:03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500,000
11	2016. 1. 8. 08:48	이 사건 J조합 계좌	S	5,000,000
	2016. 1. 8. 08:5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
13	2016. 6. 3. 09:47	이 사건 J조합 계좌	T	20,000,000
	2016. 6. 3. 10:0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8,000,000
14	2016. 8. 10. 12:21	이 사건 J조합 계좌	U	6,000,000
	2016. 8. 10. 15:45	이 사건 F은행 계좌	C	6,000,000

15	2016. 9. 8. 15:10	이 사건 J조합 계좌	V	7,000,000
	2016. 9. 9. 15:16	이 사건 F은행 계좌	C	7,000,000
16	2016. 11. 2. 13:21~ 2016. 11. 2. 13:22	이 사건 J조합 계좌	W	8,500,000
	2016. 11. 2. 15:02	이 사건 F은행 계좌	C	9,000,000
17	2016. 11. 30. 13:38	이 사건 J조합 계좌	X	50,000,000
	2016. 11. 30. 13:50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0
18	2016. 12. 1. 10:57	이 사건 J조합 계좌	Y	15,000,000
	2016. 12. 1. 12:3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5,000,000
19	2017. 1. 25. 14:52	이 사건 J조합 계좌	Z	100,000,000
	2017. 1. 25. 14:53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20, 21, 22	2017. 2. 15. 15:03	이 사건 J조합 계좌	AA	305,500,000
	2017. 2. 15. 15:06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2017. 2. 15. 15:07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2017. 2. 15. 15:08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23	2017. 4. 11. 17:16	이 사건 J조합 계좌	AB 카드론	19,500,000
	2017. 4. 11. 17:19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9,000,000
24	2017. 4. 14. 13:06	이 사건 J조합 계좌	AC	100,000,000
	2017. 4. 14. 13:1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25, 26	2017. 4. 19. 07:47	이 사건 J조합 계좌	AD	100,000,000
	2017. 4. 19. 07:51	이 사건 J조합 계좌	AD	15,500,000
	2017. 4. 19. 09:56	이 사건 J조합 계좌	AE	50,000,000
	2017. 4. 19. 09:59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2017. 4. 19. 10:00	이 사건 F은행 계좌	C	60,000,000
27	2017. 4. 19. 14:55	이 사건 J조합 계좌	AA	31,800,000
	2017. 4. 19. 15:43	이 사건 F은행 계좌	C	32,000,000
28	2017. 4. 25. 10:49	이 사건 J조합 계좌	AD	50,000,000
	2017. 4. 25. 11:03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0
29	2017. 5. 1. 16:39	이 사건 J조합 계좌	AF	6,000,000
	2017. 5. 1. 16:40	이 사건 J조합 계좌	AF	1,700,000
	2017. 5. 2. 09:53	이 사건 F은행 계좌	C	8,000,000
30	2017. 5. 8. 11:51	이 사건 J조합 계좌	AD	50,000,000
	2017. 5. 8. 12:25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2,000,000
32	2017. 5. 23. 12:01	이 사건 J조합 계좌	Q	4,000,000
	2017. 5. 24. 10:10	이 사건 J조합 계좌	AG	20,000,000
	2017. 5. 24. 11:02	이 사건 F은행 계좌	C	24,000,000
33	2017. 6. 8. 12:50	이 사건 J조합 계좌	AH	80,000,000
	2017. 6. 8. 13:4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80,000,000
34	2017. 6. 12. 08:19	이 사건 J조합 계좌	AD	50,000,000
	2017. 6. 12. 08:48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0
35, 36	2017. 6. 22. 08:54	이 사건 J조합 계좌	AI	100,000,000
	2017. 6. 22. 08:56	이 사건 J조합 계좌	AI	100,000,000
	2017. 6. 22. 08:59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2017. 6. 22. 09:0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37	2017. 7. 3. 12:55	이 사건 J조합 계좌	AE	100,000,000

	2017. 7. 3. 12:56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38	2017. 7. 13. 14:44	이 사건 J조합 계좌	AD	50,000,000
	2017. 7. 13. 14:45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0
39	2017. 8. 10. 09:13	이 사건 J조합 계좌	AJ	50,000,000
	2017. 8. 10. 09:42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0
40	2017. 9. 5. 14:47	이 사건 J조합 계좌	AA	5,000,000
	2017. 9. 6. 07:08	이 사건 J조합 계좌	AE	80,000,000
	2017. 9. 6. 07:10	이 사건 F은행 계좌	C	85,000,000
41	2017. 9. 15. 08:18	이 사건 J조합 계좌	AK	50,000,000
	2017. 9. 15. 09:0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50,000,000
42	2017. 10. 13. 12:42	이 사건 J조합 계좌	AE	75,000,000
	2017. 10. 13. 12:43	이 사건 F은행 계좌	C	75,000,000
43	2017. 11. 22. 10:58	이 사건 J조합 계좌	AA	100,000,000
	2017. 11. 22. 11:11	이 사건 F은행 계좌	C	100,000,000
44	2018. 2. 20. 13:05	이 사건 J조합 계좌	AL	30,000,000
	2018. 2. 20. 14:14	이 사건 F은행 계좌	C	29,500,000

끝.

1) Financial Transaction Trace Program: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의 숨겨진 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통합 분석시스템을 말한다.